

등록번호	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

협조자				

## “창업기업의 법인유지비용 절감 방안” 연구용역 결과보고

산업연구원의 창업기업에 대한 「법인유지비용 절감 및 사업활동 원활화 방안」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을 보고드립니다 :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연구용역 개요

- 배 경
  - 창업이후 일정기간(7년) 동안 창업초기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활동과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,
  -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제들을 발굴,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촉진 도모
  
- 용역기관 및 연구자 : 산업연구원, 양현봉 박사 단독수행
  - 용역기간 : ‘08.8.28 ~ 12.20,      ○ 용역금액 : 1,975만원
  
- 연구범위 및 방법
  - (범위) 창업기업 법인유지비용 및 사업활동 제약요인 조사·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안제시
  - (방법) ‘01년 이후에 설립된 제조업 등의 회사를 직접 창업한 4천명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(응답자 : 402개 기업) 등
  
-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: 최종보고서(30권) 제출

## Ⅱ. 주요내용

### 1. 창업기업 법인유지비용 현황 및 개선방안

#### ① 창업기업 이사의 임기연장 방안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매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해야함(상법 제383조)

\* (등기절차) 이사회 의사록작성→ 공증인의 인증→등기신청의 절차를 거치며, 1회 등기비용은 법무사 대행료를 포함하여 약 34만원 소요

○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주식 및 회사의 지분을 거래하지 않는 폐쇄회사로서 이사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

○ 창업기업들은 법인유지를 위해 3년마다 일정비용을 부담하며 이사를 재등록하고 있음

<창업기업 이사임기 재등록 위반 건수>

구 분	2006년	2007년
재등록 위반 건수	3,558	8,701

자료 : 법원행정처

□ **(개선방안)** 일정규모 이하(예 : 자본금 5억원)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5년이상으로 연장

(예) 자본금 5억원 이하면서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, 정관에 ‘주식양도제한 회사’라는 규정을 둘 경우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

#### ② 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온라인화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법인이 기업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의무 발생

○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44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, 더구나 등기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

□ (개선방안) 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온라인 처리

- 주소를 변경할 경우 ‘사업자등록증의 주소’와 ‘법인 등기부상의 주소’가 자동변경될 수 있도록 대법원망, 국세망, 행정망의 온라인화 추진
- \* 현재는 행정전산망과 국세전산망은 연계되어 있어 대표이사 주소변경시 법인사업자의 주소가 자동 갱신됨

③ 창업기업의 균등할 주민세 납부면제 방안

□ (현황 및 문제점) 모든 기업은 지방세법(제176조 1항)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해야함. 자본금 5억원 이하의 창업기업도 매년 5만원의 ‘주민세’를 납부해야함

-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매출 부진, 자금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할 때 주민세는 비용(7년간 35만원)부담 요인

□ (개선방안) 창업 후 4년 이내, 자본금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기업에게 ‘주민세’(5만원) 납부 면제방안 도입

- \* 창업기업은 회사설립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조특법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어 주민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면제할 필요가 있음

④ 창업기업의 등기사항 등의 신문광고 개선방안

□ (현황 및 문제점) 상법(제 289조) 등은 주식회사의 등기 및 결산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음

- 상장법인,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보호, 회사의 신뢰성 유지차원에서 등기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가 있으나,
- 비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않은 소규모 기업은 등기나 결산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할 필요성이 낮을 뿐 아니라,

(‘08.12.23(화), 창업기업 법인유지비용 절감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, 창업기반팀)

- 공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도 없어, 실효성이 약화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데도 상당수의 창업기업은 상법 등에 의거 등기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부담 상존

□ **(개선방안)** 상법상 공고관련 규정을 상장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필요

## 2. 창업환경과 창업기업 사업활동 실태조사 결과

### □ 창업환경 및 사업활동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

-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경쟁국인 대만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 (69.6%)으로 나타남
  - 열악한 주된 요인이 ‘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약(33%)’, ‘복잡한 창업절차(28.6%)’ 및 ‘상대적으로 높은 세제(23.9%)’순으로 조사됨
- 창업이후 직면한 가장 큰 애로는 자금(51.5%), 인력(21.9%), 판로(12.4%)이며,
  - 특히 자금조달의 경우 창업초기는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개인자금 사용(44.8%)이 많았으나, 엔젤(2.5%)과 벤처캐피털은(0.5%)의 매우 저조

□ **(조사결과 평가)** 창업환경 개선책으로 창업실패시 ‘면책재산 범위 확대’, ‘창업절차 간소화’, 창업초기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‘벤처캐피털 활성화’ 등을 제시

⇒ 대부분의 개선과제가 금년 상반기 창업활성화 대책에 반영되어 시행중

- \*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(08.4), 창업기업 펀드 출자비율 확대, 기업부도 파산시 압류 면제범위 확대, 창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(08.6) 등

### Ⅲ. 용역결과 활용방안

---

- (기 반영된 과제) ‘수도권 창업기업 등록세 중과완화’, ‘창업기업의 증자 및 주소 변경시 등록세 면제’
  - 기업환경개선대책(08.6)과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(‘08.8)에서 채택되어 제도개선을 추진중
  
-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업환경개선대책 회의에서 과제발굴 요구시 자료로 활용
  - ① 창업기업 이사 재등록 제도개선
  - ② 주민세 부과 면제
  - ③ 법인 및 대표이사 주소변경 온라인화
  - ④ 등기변동 사항 및 결산사항의 신문공고 의무화 개선